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5
----------	------

2024년 2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박수빈 의원 외 27명
나. 발의일 : 2024년 2월 1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수빈 의원)

가. 주문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6759호)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20배 이상임.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함.
-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공동과세를 통한 조정 전·후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냄.
- 그러나 공동과세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재정 격차 완화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음.
-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이 발의됐으나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940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의 신속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건의안은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국회에 제안(2020.12.21.)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촉구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수의 100분의 50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7.20. 시행), 「지방세기본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으로 이관하여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경과: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 한편,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분 상향 조정(50% → 60%)안은 제387회 국회(임사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2021.5.12.) 되었으나,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안 처리 경과 >

의안 (번호)	제안자	제안일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59)	이해식 의원 등 13인	2020.12.21.	2020.12.22.	2021.5.12.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2020.12.21. 제안) >

현행	개정법률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생략)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u>100분의 50</u>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② ----- ----- ----- ----- ----- <u>100분의 60</u> 과 <u>100분의 40</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이는 자치구 간 재원을 이전하는 문제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 배분 방식을,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거나,
- 조정교부금 제도 활용을 통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과세 제도(특별시분 재산세 균등 교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규모 격차 확대에 따라 재정 격차도 심화되고 있고,
 -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2024.5.29.)와 함께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는바,
 - 서울시민이 균등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통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1조 7,615억원) 대비 4.0%(706억원) 감액된 1조 6,909억원 수준으로,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676억원) 교부할 계획임.

< 서울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균등)_예산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교부액	16,909	17,615	18,374	16,454	14,292
전년대비 증감	△706 (△4.0%)	△759 (△4.1%)	1,920 (11.7%)	2,162 (15.1%)	2,172 (17.9%)

- 2024년도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3조 3,817억원 수준으로, 이 중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7,420억원 규모인 반면, 세입이 가장 적은 강북구는 283억원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26.3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 현행 공동과세(특별시분 재산세 균등 교부) 제도에 따른 재산세 배분 효과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3,034억원 감소한 4,386억원으로, 강북구는 535억원 증가한 818억원으로 세입이 조정되어 그 격차가 5.4배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재산세수입 관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추이_예산기준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강남구	강북구	차액	배수
2018년도	2,869	610	2,259	4.7배
2019년도	3,400	689	2,711	5.0배
2020년도	3,870	673	3,197	5.1배
2020년도	3,870	673	3,197	5.0배
2021년도	4,473	841	3,632	5.3배
2022년도	4,730	889	3,841	5.3배
2023년도	4,570	852	3,718	5.4배
2024년도	4,386	818	3,568	5.4배

- 나아가, 본 건의안을 반영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강남구 3,780억원, 강북구는 925억원으로 세입 규모가 조정되어 그 격차는 4.1배로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안 취지대로, 계류 중인 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자치구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산세는 본래 자치구 세입 과목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의 상향이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치구도 병존하고 있는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장(3차) - 2023.11.30.

① 반대(8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종로

※ 출처: 재무국 검토의견 중 (세제과-2856, 2024.2.14.)

- 자치구의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한 균등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한편, 특별시분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은 상호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심화되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 재무국은 본 건의안에 대해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재무국 검토의견 (세제과-2856, 2024.2.14.)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 예상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세부의견 별첨(붙임 4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2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1일

발 의 자: 박수빈, 강동길, 김 경,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서호연,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경숙,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28명)

1. 주문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
등하게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
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06759호)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 주
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
는 매년 20배 이상임.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
발함
-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
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냄

- 그러나 공동과세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재정 격차 완화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음
-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이 발의됐으나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940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의 신속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20배 이상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악화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관할구역인 25개 자치구에 교부한다.

공동과세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효과도 분명하다.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한다. 2022년, 재산 세액이 가장 적은 강북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 간 조정 전 격차는 26.3배지만 조정 후 격차는 5.4배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완화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가 강남구의 가파른 재산 가치 상승곡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 원, 2021년 7,556억 원, 2022년 8,354억 원으로 연평균 900억 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298억 원, 2021년 292억 원, 2022년 318억 원으로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다. 2020년에서 2022년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오름세를 단순 비교하면 무려 92배 차이이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 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이 발의됐다. 2/3 이상의 자치구가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는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이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4개월이다.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강남 개발 이면에 뿌리 깊이 박힌 지역 간 불균형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다. 개정안의 통과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 0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